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1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 홍석준·김석기·김희국

홍준표 • 이헌승 • 추경호

양금희 · 김승수 · 김용판

강대식 · 류성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'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'을 의결하였으며, 그 주요내용은 R&D의 유사·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&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'1부처 1전문기관'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. 그런데,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&D의 기획·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.

산업 및 에너지 기술 R&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&D 기능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.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

것임(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)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39조제1항).
- 나.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 및 평가,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,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 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함(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 제목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산업기술혁신사업"을 "산업기술혁신사업"을 "산업기술혁신사업 및 「에너지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사업(이하 "에너지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"으로,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이하 "기획평가원"이라 한다)"으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평가관리원"을 "기획평가원"으로 하고, 같은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의 "산업기술혁신"을 "산업기술혁신 및 에너지기술개발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에너지기술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 및 평가
 - 나.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
 - 다.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했 아 제39조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39조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 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 사업 및 「에너지법」 제12조 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 관한 사업(이하 "에너지기 을 설립한다. 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----------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(이하 "기획평가원"이라 한다)----.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② 기획평가원-----사업을 수행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2. 에너지기술 관련 다음 각 목 의 사업 가.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 획·관리 및 평가 나.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다.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 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워 2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 3. -----산업기술혁신 및 에너지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기술개발-----

정하는 사업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